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정보 및 정의)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92		
정원	152명 (일반실 120명, 치매전담 가형 1실 16명, 2실 16명)	홈페이지 (블로그)주소	https://blog.naver.com /lc222
설립 형태	개인	기관 유형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이광형	시설장	신현란
종사자 수	101명	이메일주소	lc222@naver.com
전화번호	032) 298-1004	팩스번호	032) 298-1005

1. "입소자"란 사랑의요양원 3호점에 입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입소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제공되는 장기요양시설을 말한다.

제 2 조 (이용정원)

각 사업내용별 입소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정원 : 160 명 (일반실 : 144 명, 치매전담실 : 16 명)
위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함

제 3 조 (이용 대상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시설)를 받도록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 4 조 (급여계약 등)

1.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와 계약을 진행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급여제공 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계약에는 하기 사항이 포함된다.
 - 1) 계약당사자 정보
 - 2) 계약기간

- 3) 입소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급여 및 비급여 비용)
 - 4) 급여이용 및 제공 (이용 요일, 이용 시간, 1 달 내 이용일)
 - 5)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퇴소 관련 사항
 - 6) 시설관리 및 생활,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식사 및 간식
 - 7) 개인정보보호의무, 배상책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대한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와 시설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3. 1 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된다. 다만,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3 항에 대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 2) 장기요양 급여비용
 - 3) 비급여비용 등

제 6 조 (계약목적)

1. 기관과 입소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입소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2.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경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일부 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일반실)	1등급	본인부담 20% (30일기준)	90,450	2,713,500	2,170,800	542,700
	2등급		83,910	2,517,300	2,013,840	503,460
	3~5등급		79,240	2,377,200	1,901,760	475,440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일반실)	1등급	본인부담 12% (30일기준)	90,450	2,713,500	2,387,880	325,620
	2등급		83,910	2,517,300	2,215,224	302,076
	3~5등급		79,240	2,377,200	2,091,936	285,264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일반실)	1등급	본인부담 8% (30일기준)	90,450	2,713,500	2,496,420	217,080
	2등급		83,910	2,517,300	2,315,916	201,384
	3~5등급		79,240	2,377,200	2,187,024	190,176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치매전담)	2등급	본인부담 20% (30일기준)	94,220	2,826,600	2,261,280	565,320
	3~5등급		86,880	2,606,400	2,085,120	521,280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치매전담)	2등급	본인부담 12% (30일기준)	94,220	2,826,600	2,487,408	339,192
	3~5등급		86,880	2,606,400	2,293,632	312,768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치매전담)	2등급	본인부담 8% (30일기준)	94,220	2,826,600	2,600,472	226,128
	3~5등급		86,880	2,606,400	2,397,888	208,512

비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다.

- 식대 : 1 일 총 비용 - 13,800 원 (1 식 기준 4,200 원 / 간식비 1,200 원)
- 상급병실료 : 1 일 기준 1 인실 7,000 원 / 2 인실 4,000 원

제 8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제 4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계약, 사랑의요양원 3호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보호자의 권리

- 1)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2) 시설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유선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보호자의 의무

- 1) 입소자에 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2) 입소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 3) 입소자의 주소, 신상정보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4) 보호자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
- 5) 입소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조할 의무
-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7)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8) 기타 사랑의요양원 3호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제 9 조 (계약 해지)

1. 입소자나 보호자가 제 4조에 해당하는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소자가 사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2)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 3)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4) 입소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5) 기타 급여제공계약서 제 5조의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10 조 (퇴소)

1. 제 9조 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경우, 해지사유에 대한 특별한 개선 계획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입소자의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물품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하며, 반품이 되었을 경우 폐기한다.
3.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 수납한 본인부담금 중 남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반환한다. 단,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은 2~3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

※ 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

1) 일반실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 (30일)			비급여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식대 30일
1등급	90,450	542,700	325,620	217,080	414,000
2등급	83,910	503,460	302,076	201,384	
3~5등급	79,240	475,440	285,264	190,176	

※ 식대 1일 : 13,800원 (1식 4,200원 * 3식 + 1일 간식비 1,200원)

※ 별도 비급여 (상급병실료) : 1인실 1일 7,000원, 2인실 1일 4,000원

2) 치매전담실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 (30일)			비급여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식대 1일
2등급	90,450	542,700	325,620	217,080	414,000
3~5등급	83,910	503,460	302,076	201,384	

※ 식대 1일 : 13,800원 (1식 4,200원 * 3식 + 1일 간식비 1,200원)

※ 별도 비급여 (상급병실료) : 1인실 1일 7,000원, 2인실 1일 4,000원